

『제9회 안전 신기술 공모전』 개최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 안전산업 제품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안전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육성·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9회 안전 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개요

□ 목 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구성한 「안전 신기술 기업 육성 플랫폼*」 참여에 적합한 스타트업·벤처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자 함

* 안전 신기술 육성 플랫폼 : 안전 신기술 보유 스타트업·벤처 및 예비창업자를 공동으로 발굴·육성함으로써 안전산업분야 발전 및 산재예방에 기여

□ 분 야

- 산업·재난·소방 등 안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스마트 기반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
- 신기술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자율주행차)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포함

<4차 산업혁명 기술>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 콘텐츠,
- ⑦ 지능형 로봇, ⑧ 시스템 반도체, ⑨ 자율주행차, ⑩ 바이오, ⑪ 의료기기,
- ⑫ 기능성 식품, ⑬ 드론·개인이동수단, ⑭ 미래형 선박, ⑮ 재난/안전, ⑯스마트홈 등

□ 참여기관

- 주최·주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 안전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하** 스타트업·벤처 및 예비창업자
- 또는, 안전 관련 신기술 개발* 인증일로부터 **3년 이하 기업**
 - * 특허 등록일,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일 등 공인된 내용에 한하며, 특허 또는 인증 분야는 안전관련 핵심기술에 한함 (안전과 무관한 내용 또는 부분인증 불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경우 최초 회사 설립일이 2019년 4월 1일(업력 7년 이내) 이후에 창업한 경우 신청가능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참고2]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하여 신청 창업여부 확인)
 - * 공모전에 신청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법인)와의 창업여부 확인 필수

□ 시상규모

구 분	시상규모	시상금	훈 격
계	10개사	1,800만원	-
대 상	1개사	500만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최 우 수 상	2개사	각 300만원	
우 수 상	7개사	각 100만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 상기 시상규모 등은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4. 1.(수) ~ 4. 30.(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울산스타트업허브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접수

- 상세주소 : <https://ulsanstartuphub.kr/>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은 받지 않음

※ 가급적, 접수 마감일 1~2일 전에 접수완료를 권장

□ 제출서류 및 필수사항

○ 제출서류 ① ~ ⑥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창업사실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 등) 참가 자격의 증빙을 위한 서류는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제출 요청 예정

제출서류	필수/선택	비고
① 참가신청서	필수	붙임 양식 사용
② 사업계획서	필수	
③ 참가서약서	필수	
④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동의서	필수	
⑤ 가점 증빙을 위한 서류	해당시 첨부	울산시 소재 : 사업자등록증 예비 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⑥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 등)	해당시 첨부	지식재산권 등록증, 신기술 개발 인증서 등 관련 증빙을 위한 서류
⑦ 창업사실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등)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제출 요청 예정

※ 증빙자료가 없는 지식재산권 및 인증 기재 사실은 인정하지 않음

3

추진일정 및 심사

□ 선정심사

① 서류심사	② 발표심사	③ 최종선정
선정규모의 2배수를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발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발표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아이템 및 기술의 안전문제 해결수준,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과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등에 대해 서류 및 발표심사*

* 발표심사 시, 신청자 본인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서류심사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심사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추진일정

선발 과정	일 정	비 고
서류 접수	4. 1.(수) ~ 4. 30.(목), 18:00까지	울산스타트업허브 홈페이지 접수 (https://ulsanstartuphub.kr/)
서류심사	5. 11.(월)	혁신센터 홈페이지 및 이메일 공지(개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5. 13.(수)	
발표심사	5. 15.(금)	
최종 발표	5. 19.(화)	공단 및 혁신센터 홈페이지, 이메일 공지(개별)
시상식	5. 22.(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심사 대상 팀은 발표심사 일정을 숙지하시어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발표심사 일정·방법 등 상세내용은 개별 공지에정)

□ 심사방법

구 분	심사방법	심사위원	비고
1차 심사	서류심사	산학연 기관 민간기업에서 위촉 / (총 4~6명)	2배수 선정
2차 심사	발표심사	산학연 기관 민간기업에서 위촉 / (총 4~6명)	1배수 선정

□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심사내용
기술성 (50점)	필요성	10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
	혁신성	20	기술의 혁신성과 우수성 신기술 해당여부 및 유사기술과의 차별성
	안전성	20	산업·재난·소방분야 현장의 안전문제 해결수준
사업성 (30점)	수익성	10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및 수익모델
	시장성	10	목표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확장성	10	다수 산업분야의 활용도 및 확장성
개발역량 (20점)	계획 구체성	10	개발 목표 및 기간의 타당성, 구체성
	기술개발 역량	10	기술개발 능력 및 기술 자립성 창업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가 점*		(+1)	사업 공고일(2026.04.01.) 기준 예비창업자
합 계		100(+1)	-

* 가점사항은 서류심사에만 반영하며, 발표심사에는 반영하지 않음

※ 세부 배점 및 심사 기준은 조정될 수 있음

4

행정사항

□ 유의사항

- 다음 사유에 의한 법정 분쟁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기업(자)에 있음
 - 저작권이 있는 아이디어, 캐릭터, 프로그램 등의 임의사용
 - 수상아이템에 대한 제3자의 저작권 등의 침해로 분쟁 발생 시
 -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경우
 - 기타 제출·선발된 신기술 아이디어에 관한 저작권 관련 사항 등
-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한 당선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급된 상금을 반납해야 하며 공단·혁신센터 사업 참여 5년간 금지
- 심사 과정에서 허위 기재, 지칭 미준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향후 공단·혁신센터 사업 참여 3년간 금지
- 제출일정 및 응모관련
 - 심사 및 시상일정, 지원프로그램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제출 마감일(공모마감 : '26. 4. 30, 18:00) 이후에는 참가기업(자)이 작성한 일체의 신청내용 변경 불가
 - 필요 시 참가기업(자)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대회에 참가기업(자) 당 최대 2개 아이템까지 신청 가능
- 심사결과 및 시상관련
 - 심사 결과(심사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 공모전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훈격 조정 등 시상내역 변동 가능

□ 성과공유 계약의 체결

- 공모전 수상기업은 성과공유계약을 개별 체결(선발 초기업)
 - 계약상대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계약기간 : 성과공유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주요내용

- 계약체결 이후,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단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

* 예시) 지식재산권 공유, 신규 매출 창출,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의 공익목적 환원 등

신청 제외대상

- 타인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단, 최종선정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소상공인 아이템
- 기 실시한 프로그램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아래 표 참고)
 - 단, 기수상 아이템과 동일한 아이템이 아닌 다른 아이템에 관해서는 지원 가능

2018 산업안전공모전, 2019~2025 안전 신기술 공모전, 2015~2025 현대중공업 기술공모전

5 문의처

문의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문의: 접수 및 공모전 전반)			
[전화]	052-230-3421	[FAX]	052-700-7134
[E-MAIL]	leesh@ccei.kr		
[주소]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종하이노베이션센터 4층)		
[담당부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본부 오픈이노베이션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 접수 및 Test Bed)			
[전화]	052-703-0539	[FAX]	052-703-0309
[주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SG경영성과실 ESG경영부		

※ 공고 내용 중 접수처와 문의처 필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안전 신기술 수상기업 공동 특별관」 운영

○ 프로그램 개요

-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7월 첫 주)에 개최되는 국제산업안전보건전시회(킨텍스) 內에 공모전 수상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특별 공동 전시관 설치·운영

○ 주요내용

- 전시기간 : 2026. 7. 6.(월) ~ 9.(목)
- 지원자격 : 안전신기술공모전 최종 선정 후 별도 선정
- 지원내용 : 독립부스 설치비 및 운영비, 통역비, 홍보물 등
※ 전시부스 임차료 일부는 참여기업이 부담

□ 제3회 베트남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 지원

○ 프로그램 개요

- 참관객 대상 제품 기능 발표 및 구매상담, 스마트 기술 도입 건에 대한 스마트 안전 세미나 참가, 국산 안전제품 대상 국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진행

○ 주요내용

- 전시기간 : 2026. 9. 9.(수) ~ 11.(금)
- 지원자격 : 안전신기술공모전 최종 선정 후 별도 선정
- 지원내용 : 부스 설치비 및 운영비, 통역비, 홍보물 등
※ 전시부스 임차료 일부는 참여기업이 부담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Seed 투자 및 외부 투자연계 지원

- 센터 내 추천팀 대상 데모데이(IR) 평가에 따라 우수팀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Seed 투자 / 타 TIPS 운영사 Seed 투자 및 TIPS 연계 지원

□ 금융 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

○ 기술임치 프로그램 제공(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에 기술 임치 시 수수료 지원 (별도 발생 수수료 10%는 기업 부담)

<기술임치 대상 정보>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제조 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진출목적, 비전, 성장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업 선발

○ 공단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금융혜택 지원

협약기관	주요혜택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실행 시 최초 3년 간 보증비율 100% 적용(담보 없음) ■ 기업별 보증요율에서 0.2%p 감면
한국무역보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중장기 수출보험 한도 1.5배 우대 및 보험료 30% 할인 ■ 수출신용보증 한도 1.5배 우대 및 보증료 20% 할인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활성화 지원' 대출금리 최대 1.5%p 우대(최대 150억원 이내) ■ 수출금융 프로그램 대출금리 최대 0.1%p 우대

※ 상기 금융혜택은 공단과 각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협약기관 자체 지원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혜택 부여가 제한됨

□ 스타트업 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

1) 공단 보유 안전보건분야 우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유·무상 허여

2)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수시)

- 안전인증, PSM, 시제품 개발 Test Bed*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관련 정보 제공 등 안전규격에 맞는 제품 개발 조언

* Test Bed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한함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3D Tech shop에서 제작가능한 시제품에 한함

3) 스타트업 기업 안전역량강화 워크숍

- 신기술 트렌드 공유, 기업 간 네트워킹,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특강 등

상기 지원 프로그램은
주관 기관/정부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2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 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 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 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창 업 창업 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 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 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 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 아님		

-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것에 한함
 -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